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853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이주희 · 김영배 · 김우영  
박균택 · 임미애 · 한민수  
김한규 · 김동아 · 박민규  
민병덕 · 임문영 · 문진석  
양부남 · 김선민 · 김 윤  
정태호 · 최혁진 의원  
(17인)

###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종합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

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이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

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보장 및 미디어 활용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매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및 같은 조 제12호의2  
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

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직접 생성하거나 선택한 정보(부호  
·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공유 ·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자. 그 밖에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 매개  
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의 증진 및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  
한 대응 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  
한다.
3.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란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 ·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  
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미디어교육시설”이란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미디어 관련 사업자”란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또는 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 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과 미디어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미디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미디어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미디어교육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소관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디어교육 지원의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8명
2.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8명
3. 미디어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4. 그 밖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디어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교육의 지원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시설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미디어 이용자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로서 미디어를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취약계층 미디어 서비스 제공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의 실시 등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제12조제5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